

보다 안전한 미래  
(사)한국시설물안전진단협회

(우)06367 서울시 강남구 광평로56길 14, 6층(수서동, 하나빌딩) / Tel 02-567-1307/ Fax 02-567-1337

[www.assi.or.kr](http://www.assi.or.kr) E-Mail : [assi1337@naver.com](mailto:assi1337@naver.com) 담당 : 박용복 국장

문서번호 시험 2021 - 364호

시행일자 2021. 8. 12.

수 신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참 조 주택과장

선			지	
결			시	
접	일자		결	
	시간		재	
수	번호		공	
처	리	과	람	
담	당	자		

제 목 타워크레인 설치·인상·해체 적정 인원 협회 의견

1. 건설과 시설물 안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귀 구에 경의를 표합니다.
  
2. 귀청에서 문의하신 “자격인력 기준이 4인이상으로 되어있음” 은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업의 등록을 위한 인력·시설 및 장비 기준을 말하고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82조 제1항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72조 제1항 /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별표22])
  
3. 타워크레인 설치·해체 작업을 할 수 있는 자격자의 기준은 산업안전보건법 제82조 제2항에서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자로 하여금 타워크레인을 설치하거나 해체하는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고 규정되어 있어, 인원수에 대한 규정은 따로 없습니다.
  
4. 우리 협회에서 파악한 타워크레인에 대한 사고 사례를 분석해보면, 설치·해체 작업 중 발생하는 사고가 대부분이며, 사고 발생 원인의 많은 부분이 적정 작업인력 부족으로, 작업을 서두르거나 불트체결 누락 등 체계적인 작업자의 역할이 미흡하여 발생하는 사례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5. 타워크레인의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하여는 적정 작업 인력의 투입이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안전한 설치·인상·해체 작업을 위한 적정인원은

다음과 같이 최소 6명 이상으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 다 음 -

① 작업팀(6명, 유자격자)

- 작업팀장 : 1명

- 작업팀원 : 4명

- 타워크레인 조종사 : 1명

② 작업총괄책임자(1명, 산업안전보건법상 관리감독자). 끝.

(사)한국시설물안전진단협회

